| | |
|---|---|
| 의안번호 | 2216891 |
| 의 뢰 인 | 이만희의원 |
| 회 답 일 | 2026.9.2. |
| 추계번호 | 26D0916 |

#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# Ⅰ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| 주요내용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1 | 제19조(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)제1항 |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 · 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조치를 할 수 있음 | 재량규정 |

# 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## 1. 근거 규정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| 미첨부 근거 규정 |
|---|---|---|
| 1 | 제19조(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)제1항 |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|

## 2. 상세 사유

❑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로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(안 제29조 제1항)

○ 개정안에 따라 법원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임시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조치를 추가할 경우 전자장치 부착 건수 증가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○ 현재 전자장치 부착에 소요되는 예산이 포함된 2026년 법무부 전자감독 사업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

[표 1] 전자감독 예산 내역: 2026년

(단위: 백만원)

| 구분 | 세부사업 | 예산 |
|---|---|---|
| 전자감독 | 전자감독·신상정보 등록 전담인력 운영 | 11,212 |
| | 전자감독·신상정보 등록 운영 | 6,940 |
| | 장치 및 시스템 개선 | 17,865 |
| | 사업지원경비 | 1,249 |

자료: 법무부 확정예산 사업설명자료

○ 현재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는 현행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퇴거 등 격리(제1호),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(제2호),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(제3호),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(제4호),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(제5호),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(제6호),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(제7호)의 임시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

○ 다만, 개정안에 따라 임시조치로 신설되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건수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
○ 참고로,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전체 임시조치 결정 건수는 다음과 같음

[표 2] 연도별 임시조치 결정 건수: 2021~2025년

(단위: 건)

| 구 분 | 2021년 | 2022년 | 2023년 | 2024년 | 2025년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임시조치 결정 | 6,347 | 6,329 | 7,089 | 8,161 | 9,492 |

자료: 대법원

❑ 따라서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# Ⅲ. 부대의견

❑ 없음

# Ⅳ. 작성자

❑ 성명
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|
|---|---|---|
| 행정비용추계과 | 박은비 | 김안나 |

❑ 대표연락처

| 성명 | 전화번호 | 이메일 주소 |
|---|---|---|
| 박은비 | 02-6788-4831 | ebpark@nabo.go.kr |